

제325회 정례회  
2013.12.20(금)

# 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  
산 업 경 제 위 원 회

「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」  
심 사 보 고 서

2013. 12. 20 (금)

산업경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3년 12월 02일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12월 04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12월 10일

(제32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윤재길 경제통상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신성장 동력산업인 태양광산업을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 
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,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 
제정하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- 도의 책무(안 제3조)
  - 태양광산업 육성 방안 강구,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 장려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사업 및 전시·판매 범위(안 제3조 및 제4조)
- 태양광산업육성계획의 수립(안 제4조)
-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 설치(안 제5조)
- 사업의 시행 및 투자권고(안 제6조 및 안 제7조)
- 기업 등에 대한 지원(안 제9조)
  - 솔라 그린시티 조성,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, 설비보급 사업 등

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 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나기성)

- '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'은 신성장 동력산업인 태양광산업을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태양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, 이와 관련한 기술개발·이용·보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조례안의 입안형식인 조례의 필요성, 법 적합성, 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, 표현의 명료성 등의 기준으로 조례의 체계 검토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적절함.
- 다만, 안 제4조 '태양광산업육성계획'을 비용추계서에 따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매년 육성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, 안 제5조 '충청북도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'를 '충청북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'에서 대행한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 태양광산업 분야 전문가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
- 또한,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5년간 총 9,59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여기에 도비도 657억이 필요한데 동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

##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태양광산업 발전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, 이와 관련한 기술개발·이용·보급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태양광산업”이란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만드는 태양광발전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.

**제3조(도의 책무)** ①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는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과 이용·보급의 촉진을 통해 태양광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고,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도는 시·군, 공공기관,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태양광의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을 장려하고 이를 보호·육성하여야 한다.

**제4조(태양광산업육성계획의 수립)**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육성계획(이하 “육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
2. 기술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
3.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
4.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
5.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
6. 설비 보급에 관한 사항
7.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 동향, 시장의 변화,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
**제5조(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 설치)**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 육성 및 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태양광산업육성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육성계획의 수립·시행
2. 인력양성 시책 및 사업 시행
3. 시범사업 및 설비 보급 추진
4.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 촉진
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북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.

**제6조(사업의 시행)**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약을 맺어 제9조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에 따른 특정연구기관
2.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
3. 「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」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
4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
5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
6. 국공립연구기관
7.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
8. 그 밖에 태양광산업 관련협회, 협동조합, 기업체, 시민단체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**제7조(투자권고)** ① 도지사는 태양광관련 사업자에게 태양광 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거나 출연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태양광의 활용여건을 보아 태양광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

다고 인정되는 공장·사업장 및 공동주택, 국민임대주택 등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**제8조(인력양성)**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기관 등과 연계하여 태양에너지 분야의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여 태양광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9조(기업 등에 대한 지원)**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기업, 기관,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솔라그린시티 조성
2.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의 건립 및 운영
3. 태양광산업 기술개발
4. 태양광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·훈련
5. 태양광 시범사업 및 설비 보급 사업
6. 태양광 관련기업의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
7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10조(국내·외 기업 등 유치)** ① 도지사는 태양광산업과 관련된 국내·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(이하 “기업 등”이라 한다)을 도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「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11조(수요조사)**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.

**제12조(포상)** 도지사는 태양광산업의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1.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이 우수한 단체 및 개인
2. 태양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술·설비·제품의 개발에 기여한 개인·단체 및 기업체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# □ 에너지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,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역에너지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### 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

제4조(시책과 장려 등)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,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을 장려하고 보호·육성하여야 한다.

### □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

제11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.

8. 기타 전략산업 및 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한 주요사항 등

[별지 제1호 서식]

## 충청북도 태양광산업 육성 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1. 사업개요

- 위     치 : 도내 일원
- 사업기간 : 2014 ~ 2018
- 내     용 : 태양광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육성

### 2. 비용 발생 요인

- 솔라 그린시티조성,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, 기술개발지원
- 인력양성, 시범사업 및 설비보급사업,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 등 제비용

### 3. 관련조문 : 제9조

#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솔라 그린시티 조성,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, 기술개발지원, 인력양성
- 시범사업 및 설비보급사업, 기업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

#### 나. 추계 결과 : 9,590억원

- 솔라 그린시티조성 : 4,214억원(국비 1,967, 도비 343, 시군비 798, 기타 1,106)
-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건립 : 2284억원(국비 13.3, 도비 123.2, 시군비 33, 기타 58.9)
- 기술지원           : 31.6억원(국비 12.7, 도비 8.3, 시군비 0, 기타 10.6)
- 전문인력양성 : 34억원(국비 15, 도비 2.2, 시군비 4.3, 기타 12.5)
- 시범,보급사업 : 5,041.6억원(국비 529.6, 도비 147.9, 시군비 429.6, 기타 3,934.5)
- 홍보,시장개척 : 41.1억원(국비 0.7, 도비 32.9, 시군비 0, 기타 7.5)

#### 다. 재원조달방안

- 국비 : 2,538억, 도비 : 657억, 시군비 : 1,265억, 기타 : 5,130억

#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### 6. 작성자 : 경제통상국 미래산업과장 이두표

## 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1차년도 (‘14년)	2차년도 (‘15년)	3차년도 (‘16년)	4차년도 (‘17년)	5차년도 (‘18년)	계	
세 입	-	-	-	-	-	-	
세 출	2,073.84	1,915.19	1,863.58	1,864.68	1,873.68	9,590.97	
솔라 그린시티 조성	841	841	841	841	850	4,214	
태양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	164.4	34	10	10	10	228.4	
기술지원	27.62	4	0	0	0	31.62	
인력양성	20.03	14	0	0	0	34.03	
시범사업, 설비보급사업	1,014.24	1,014.24	1,004.43	1,004.43	1,004.43	5,041.77	
홍보, 시장개척	6.55	7.95	8.15	9.25	9.25	41.15	
<b>재원 조달</b>	<b>2,073.84</b>	<b>1,915.19</b>	<b>1,863.58</b>	<b>1,864.68</b>	<b>1,873.68</b>	<b>9,590.97</b>	
의존 재원	소 계	-	-	-	-	-	
	보조금	535.11	510.08	497.08	497.08	499.08	2,538.43
	지방교부세	-	-	-	-	-	-
자체 수입	소 계	-	-	-	-	-	
	지방세	218.63	114.11	107.61	107.61	109.61	657.57
	세외수입	-	-	-	-	-	-
지방채	-	-	-	-	-	-	
기 금	-	-	-	-	-	-	
특별회계	-	-	-	-	-	-	
△△특별회계	-	-	-	-	-	-	
△△특별회계	-	-	-	-	-	-	
시·군비	256.22	270.92	244.92	244.92	247.92	1,264.9	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1,063.88	1,020.08	1,013.97	1,015.07	1,017.07	5,130.07	